대학생 선발기준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초과학기 제외)

□ **신청자격**(① ~ 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AI 핵심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전공 제한 없음)

②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한 자**

* 2회 진행('26년 7~8월, '27년 1~2월 중), 인재육성 프로그램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장학생에게 개별 안내,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00명**

□ 지원내용: **학기당 300만 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선발 후 3년 이내*, 최대 4회 지원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3년

· (예시1) 휴학 없이 계속 학업을 유지한 경우: '26-1학기 최초선발 => '27-2학기 최종 지원

· (예시2) 휴학을 1회(1개 학기) 한 경우: '26-1학기 최초선발 => '28-1학기 최종 지원

· (예시3) 휴학을 2회(2개 학기) 한 경우: '26-1학기 최초선발 => '28-2학기 최종 지원

※ 장학생 선발 후 휴학 시(군 휴학 포함) 장학생 자격 유지

※ 장학생 선발 후 졸업, 편입,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심사기준

○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40점) + 추천서(5점) + 가점(5점), 1.5배수 선발

- (가계소득) 신청자의 '26년 1학기 산정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업무처리기준의 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 심사 기준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는 자는 10구간으로 간주

- (성적)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성적(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을 기준으로 업무처리기준의 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 (추천서) 소속 대학에서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는 5점 부여

- (가점) **창업 대학생 본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북향민 본인 또는 그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 5점 부여

* 타 기부장학금과 차별화를 위해 **소득 관련 중복평가**를 **최소화**하여 우대 가점 대상 선정

※ 가점 중복 부여 없음

※ 자기소개서 내 AI 분야로의 진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차 평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1차 심사 대상 인원이 1차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 **(2차)** 자기소개서(100점): 업무처리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AI 핵심분야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 등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자기소개서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전문 위원을 위촉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우대 가점 대상자 > 저학년인 자 >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비수도권 의무선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장학생 비율 최소 **30%(60명 이상)** 선발

□ **계속 장학생 선정 기준**

○ **(인재육성 프로그램)** 재단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 참여(2회)

* '26년 여름방학(7~8월), '27년 겨울방학(1~2월) 중 진행

※ 미 참여시 계속 장학생 영구 탈락

※ 질병이나 사고, 채용 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 불참 시 관련 증빙 자료 필수 제출, 참여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결정

○ **(성적 및 학점)**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8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및 학점 미달인 경우 해당 학기 탈락(계속 장학생 자격은 유지, 수혜 학기 차감 없음), 단, 졸업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미적용

□ 증빙서류: 사회적배려계층 등 우대 가점 대상 확인용(해당자에 한해 제출)

○ **창업 대학생 본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 택1

※ 장학금 신청자가 대표자이며, 창업일이 장학금 신청일 이전으로 확인되어야 함

○ **다자녀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재단 시스템 내 다자녀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모든 자녀(기혼자 제외)

○ **북향민 본인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장학금 신청자가 북향민 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대학원생 선발기준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대학원**(석사과정) **전일제** 재학생

※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제외,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신입생 제외**,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초과학기 제외)

□ **신청자격**: **인문·사회계열*의 학과 전공자**

* 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의 계열 구분에 따름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3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500만 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선발 후 3년 이내*, 최대 4회 지원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3년

· (예시1) 휴학 없이 계속 학업을 유지한 경우: '26-1학기 최초선발 => '27-2학기 최종 지원

· (예시2) 휴학을 1회(1개 학기) 한 경우: '26-1학기 최초선발 => '28-1학기 최종 지원

· (예시3) 휴학을 2회(2개 학기) 한 경우: '26-1학기 최초선발 => '28-2학기 최종 지원

※ 장학생 선발 후 휴학 시(군 휴학 포함) 장학생 자격 유지

※ 장학생 선발 후 졸업, 편입,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심사기준

○ **(1차)** 학업계획서(70점) + 성적(30점), 2배수 선발

- (학업계획서) 업무처리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인문·사회 분야 연구, 졸업 후 진로 계획 등 내용을 포함

※ 학업계획서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전문 위원을 위촉

- (성적)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성적(최소 3학점 이상 이수)을 기준으로 업무처리기준의 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 1차 심사 대상 인원이 1차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 **(2차)** 심층면접(95점) + 가점(5점)

- (심층면접) 업무처리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심층면접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전문 위원을 위촉, 1차 학업계획서 심사위원과 2차 심층면접 심사위원은 동일인으로 위촉할 수 없음

- (가점) **창업 대학원생 본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북향민 본인 또는 그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 5점 부여

* 타 기부장학금과 차별화를 위해 **소득 관련 중복평가**를 **최소화**하여 우대 가점 대상 선정

※ 가점 중복 부여 없음

□ 동점자 처리기준: 학업계획서 고득점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우대 가점 대상자 > 저학년인 자 >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비수도권 의무선발**: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장학생 비율 최소 **30%(6명 이상)** 선발

□ **계속 장학생 선정 기준**: **(성적 및 학점)**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85점 이상, 최소 3학점 이상** 이수

※ 성적 및 학점 미달인 경우 해당 학기 탈락(계속 장학생 자격은 유지, 수혜 학기 차감 없음), 단, 졸업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미적용

□ 증빙서류: 사회적배려계층 등 우대 가점 대상 확인용(해당자에 한해 제출)

○ **창업 대학원생 본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 택1

※ 장학금 신청자가 대표자이며, 창업일이 장학금 신청일 이전으로 확인되어야 함

○ **다자녀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재단 시스템 내 다자녀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모든 자녀(기혼자 제외)

○ **북향민 본인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장학금 신청자가 북향민 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별첨 2026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끝.

별첨	2026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2026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2026. 3.

인 재 육 성 지 원 부
한 국 장 학 재 단

2026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 목적: 2026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선발** 및 **지원**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의 **명확한 제시**

Ⅰ 사업 개요

1. 2026년 장학생 선발 및 지원 계획

(단위: 명, 백만 원)

유형		인원	장학금액 (학기당)	총 예산 (4개 학기)	지원기간	지원방식
신규 선발	대학생	200	3	2,400	4개 학기 (3년 이내)	생활비 무상보조
	대학원생	20	5	400		

* 지원 기간 및 인원 등 세부사항은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름

2. 추진 일정(안)

업무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및 선발 공고	~ '26. 3. 24.(화)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26. 3. 25.(수) 09시 ~ 4. 7.(화) 18시
장학생 심사	'26. 4. 8.(수) ~ 5월 말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	'26. 5월 말

※ **심사 기준일: 심사 시작일('26. 4. 8.(수))**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심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학생 직접 신청

3. 기관별 역할 분담

○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 **(재단)** 업무처리기준 수립 및 사업 시행, 학생신청 접수,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장학금 대학(원) 지급 및 사후관리 등

○ **(대학(원))**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등록, 장학금 학생 지급, 학적 변동 등 사후관리 협조

Ⅱ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6. 3. 25.(수) 9시 ~ '26. 4. 7.(화) 18시

※ 신청 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우대 가점 사항 관련 증빙(공통), 추천서(대학생)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등록을 통해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제출

※ 재단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 등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제출, 기한 미준수 시 미제출로 간주

2. 대학(원) 추천

□ 대학(원)은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대학 관리자포털 시스템에서 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 대학(원)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학사정보, 학적 상태, 학과명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원)에서 등록한 정보로 심사 진행**

※ 단, 학사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대학원의 학생의 경우 재단에 서류 형식(대학 공문 발송)으로 학사정보 제출 가능

□ **정보 제공방식**

ㅇ 대학(원)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 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ㅇ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대학생 유형만 해당, 대학원생은 산정 제외)

ㅇ 학생 가구원의 **2026년 1학기 통합신청**(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산정된 **2026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심사 시작일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10구간**으로 **간주**

※ 최초 재단 학자금 지원 시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시작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단, '26년 1학기 통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복지 자격을 조회하여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적용

ㅇ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참고 8)]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별 점수 적용

□ **성적**

ㅇ **대학에서 산출·등록**한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사용**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 학기**로 적용

ㅇ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참고 8)]에 따라 성적 배점 기준 적용

- **성적 점수**: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X (성적 배점 비율)

□ 장학생 심사

○ 적격 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서류**(자기소개서 등), **면접 심사**를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변동 내역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 선발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 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대학생),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학업계획서(대학원생) 등 대학생/대학원생 유형별 평가항목 심사 ※ (학업계획서) AI 심사 도입으로 표절률, 충실도 등 사전 항목 검토를 통해 10배수를 선정하여 심사위원 평가 진행
2차		○ 자기소개서, 심층면접 심사 등 대학생/대학원생 유형별 평가항목 심사

* 선발 자격조건: 신청 자격, 성적, 이수학점, 학적 상태 등 심사

○ 계속 장학생은 **계속 지원 조건**(성적 및 이수학점 등) **충족 여부 심사 후 선발**

- 계속 지원 조건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 중단**

※ 단, 졸업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4.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심층면접 심사

□ 심사위원 위촉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

○ 심사위원은 평가 기준을 근거로 위촉

□ 기능

○ 사업 목적 및 평가 기준을 근거로 개별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심사 시 AI 검증 시스템을 통한 생성형 AI 사용 여부, 표절률 등을 참고자료로 심사위원에게 제공

○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인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로 대체

※ 1차와 2차 평가의 심사위원은 동일인으로 위촉할 수 없음

□ **임기**

ㅇ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 시까지

□ **수당**

ㅇ 예산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단,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중복지원 여부 확인**

ㅇ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의 **생활비** 지원유형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

ㅇ 동일 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지원**은 **불가**(신규, 계속 장학생 전체 해당)

ㅇ 등록금 유형은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6.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등록금** 및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원)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원)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7.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 ① 장학금 수혜 후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②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③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의 사유로 **장학금 수혜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참고 10)] 양식을 작성하여 대학 공문 제출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3,000,000원 × 5/6 = 2,5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3,000,000원 × 2/3 = 2,0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3,000,000원 × 1/2 = 1,5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 개시일을 포함하여 산정

□ 반환 방법

○ 대학(원)은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개별등록 및 반환처리(장학금 허위신청 판명 및 학적변동 등에 따른 반환 공통 적용)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원) 공문 제출 필수)

○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

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참고 11)] 양식에 따라 사유 등을 기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원) 공문 제출

※ 재단은 반환 예외 신청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재단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반환 예외자는 반환 예외 승인일 기준 1년 이내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불가

□ 장학금 환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원) 공문 제출 필수)

ㅇ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8. 기타 공통사항

□ 업무처리기준의 변경

ㅇ 업무처리기준의 세부사항 변경은 담당 본부장 위임전결로 처리

□ 발생이자 처리

ㅇ 삼성기부장학금 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원) 자체 수입처리

참고 1. 사회적배려계층 등 대상자(우대 가점) 제출서류(공통)

2. 학과장 추천서 양식(대학생) 3. 자기소개서 양식(대학생)

4. 학업계획서 양식(대학원생) 5. 심층면접 평가 심사표 양식(대학원생)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7. 신청인 동의서

8.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 9.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10.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 11.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끝.

참고 1 사회적배려계층 등 대상자(우대 가점) 제출서류(공통)

구 분	제출서류	비고
1. 창업 대학(원)생 본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 **택1**	* 장학금 신청자가 대표자이며, 창업일이 장학금 신청일 이전으로 확인되어야 함
2. 다자녀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 (총 2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모든 자녀(기혼자 제외) ※ 단, 재단의 타 학자금 신청으로 시스템 내 다자녀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3. 북향민 본인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학금 신청자가 북향민 자녀의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4. 다문화 가정의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기혼자 제외)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재단은 필요한 경우 위의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가족관계는 '26-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참고 2 **학과장 추천서 양식(대학생)**

학과장 추천서

○ **추천대상**

학교 및 학과	*ㅇㅇ대학교 ㅇㅇ공학과*	
추천 학생	이름(생년월일)	*나장학(000101)*
	학번	

○ **추천자(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학과명	*ㅇㅇ대학교 ㅇㅇ공학과*
교수명	

○ **추천 사유(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위 학생을 추천하는 사유를 기재(10줄 이상)

위 학생은 우리 학교 재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추천인 ㅇㅇ대학교 ㅇㅇ학과장 ㅇㅇㅇ (인)

참고 3 자기소개서 양식(대학생)

□ AI 핵심분야 커리어 시작을 위한 꿈 계획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 (1,500자 이내)
AI 관련 관심 분야 및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향후 종사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 내가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이 되어야 하는 이유 등
2. 졸업 후 AI 핵심분야에 진출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 (1,500자 이내)
향후 진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목표 달성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AI 분야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향후 계획 (1,500자 이내)
그간의 성과와 계획(향후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자유 기재 (1,500자 이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참고 4 학업계획서 양식(대학원생)

□ 인문·사회계열 커리어 시작을 위한 꿈 계획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학업계획서 작성 항목

1. 대학원 진학 동기 (최소 800자 이상, 1,500자 이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와 목표, 현재 전공을 선택한 이유 등
2. 관심 학문 분야 및 전공 분야(관심 학문)에 대한 연구 계획 (최소 800자 이상, 1,500자 이내)
관심 학문 분야와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지금까지의 성과, *앞으로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연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3. 졸업 후 진로 (최소 800자 이상, 1,500자 이내)
향후 희망 진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 계획 (최소 800자 이상, 1,500자 이내)
향후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부분과 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 *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참고 5 심층면접 평가 심사표 양식(대학원생)

[면접자 인적 사항]

면접 일자	'26. 0. 00.	장학금명	2026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지원자	성명	나장학	성별	여	면접 순서	1
	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과	○○학과	학년	1

[면접 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 의견
면접자평가	지원동기 (지원동기, 포부 등)	S	10	10		
		A	9			
		B	8			
		C	7			
		D	6			
	성장가능성 (우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잠재력)	상	30	30		
		중	20			
		하	10			
	목표달성계획 (우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향후 계획)	S	30~28	30		
		A	27~25			
		B	24~22			
		C	21~19			
		D	18~16			
	실현가능성 (희망 진로 및 비전이 구체적인지, 장학금 사용계획이 적절한지 등)	S	20~19	20		
		A	18~17			
		B	16~15			
		C	14~13			
		D	12~11			
	사회기여부분 (사회에 기여 및 환원하고자 하는 열정)	S	10	10		
		A	9			
		B	8			
		C	7			
		D	6			
	합계(종합 의견)					

면접 위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2026년 00월 00일 성명: 서명:

참고 6 2026년 1학기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 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학자금지원 효과성 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 지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 지원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 및「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객정보 변경이력 확인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교육비 면제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국가 장학사업(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포함)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인재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 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및 인재육성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인재육성 지원 사업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재외동포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 지원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심사, 선발, 행사 운영·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련 활동기관(근로지 포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객정보 변경이력 확인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사업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써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본인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 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교육비 면제 정보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국가 장학사업(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포함)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 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 정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사업 수혜에 관한 정보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인재육성 지원,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인재육성 지원 사업 선발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개명이력, 주민등록번호정정·변경이력 등),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학금 환수 등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7 **2026년 1학기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기준은 「학자금(학습비)대출 상환동의서」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반환금 산정

·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 교육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로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수혜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초과수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에 반환)
· 국가 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부정 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 미달(복지자격 등)이 발견된 경우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습비')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4.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 동의

본인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일 학기에 본인의 소속 학점은행제 학적과 본인의 소속 대학 학적으로 동시에 재단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학자금 범위>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7.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최종 연락처에 전자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 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가’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전자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

문서 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발신주의)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채무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8.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 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9. 고객 개인정보 최신화 관련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재단(개인정보처리자)이 개명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변경 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8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

[대학생]

□ 가계소득(50점) + 성적(40점)

○ 가계소득 평가 배점표

지원 구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평가 배점	50	48.5	47	45.5	44	42.5	41	39.5	38	36.5	35

○ 성적 배점 기준(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성적 점수: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점수 x 40%

[대학원생]

□ 성적(30점)

○ 성적 배점 기준(이수학점 3학점 이상)

- 성적 점수: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점수 x 30%

참고 9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2020년 사업폐지),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참고 10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 (※ 대학 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수혜 대상 장학금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지원내용	원

수혜자격 포기 사유	*사유 기재*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수혜자격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11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 대학 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